

보호자님

나고야시 교육위원회

취학원조 안내 (2025 년 9 월 ~ 2026 년 8 월분)

나고야시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자녀를 초·중학교에 취학시키는 것이 곤란하신 분에 대해 급식비나 학용품비 등 학교에서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원조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1 인정 대상자 (②는 세대 전원이 생활보호가 정지 또는 폐지된 분이 조건입니다.)

- ①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보호자
- ② 생활보호가 정지 또는 폐지된 분 (※세대 변경이 이유로 폐지된 경우 (재혼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③ 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분 (※아동수당, 한부모가정수당 등 다른 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④ 소득이 아래 표에 있는 기준액 이하인 분

4인 세대의 경우, 연봉 기준으로
약 590 만엔까지의 세대가 대상입니다.

세대 인 수	2 인 세대	3 인 세대	4 인 세대	5 인 세대	6 인 세대	7 인 세대 이상
소득기준액	321 만 8 천엔	345 만 6 천엔	417 만 8 천엔	485 만엔	537 만 6 천엔	(1인 증가할때) 45 만 5 천엔 가산

【 각 세대원의 2024 년 (1 월 ~ 12 월) 의 총소득부터 10 만엔 차액한 합산액이 위의 소득기준액 이하의 경우 】

※심사에서 사용하는 「소득」이란, 소득세·현민세·산림환경세 증명서의 「총소득 금액」입니다. 연봉은 아닙니다.

참고: 원천징수표 「급여소득 공제 후 금액」, 시민세·현민세·산림환경세 결정통지서 「총소득 금액」, 확정신고서 「소득 금액 합계」 등

※취학원조에서의 「세대」란 같은 집에 살고 계신 분 전원을 의미합니다. 조부모 등의 생계나 주민표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집에 살고 계시면 동일세대 안에 포함됩니다. 또한, 단신부임 등으로 해당 세대의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도 동일세대에 포함됩니다.

※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의 상해나 실업 (해고, 도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입이 격감한 경우, 소득이 기준액을 초과해도 배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로 상담해 주십시오. (정년·개인사정 퇴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2025 년 1 월 2 일 이후에 일본에 오는 등, 증명서 (필요 서류) 가 발급되지 않을 때에도 학교에 상담해 주세요.

물가상승의 영향을 감안해서, 당분간 소득기준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2 인정기간

인정기간은 신청이 접수된 달부터 2026 년 8 월까지 입니다 (2026 년 3 월에 중학교를 졸업한 3 학년생은 2026 년 3 월까지)

이번 신청서의 「동의」 항목의 「A 네, 동의합니다.」에 ○표시를 하고 가족 대표자 (세대주) 가 서명한 경우, 내년도 이후의 자동계속심사 (취학원조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 여부의 심사) 때에도 교육위원회가 귀하의 정보를 확인해도 좋다는 것이 됩니다.

3 주의사항 · 기타

- ① 취학원조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 ② 신청내용에 수정이나 오류가 있음이 판명되어, 인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사정을 확인하거나 직권으로 세대상황이나 소득 등을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 ③ 취학원조 인정 중에 세대상황이 바뀐 경우 (보호자 변경, 재혼, 이사, 조부모와의 동거, 세대원 증가 등)는 반드시 신속하게 학교로 연락해 주십시오. 재혼 등으로 인해 세대에 새로운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 일단 취학원조비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계속해서 취학원조를 희망하시는 경우, 새로운 세대 구성으로 재신청 하게 됩니다. 이혼 등으로 인해 세대 구성원이 줄어든 경우에는 취학원조의 지급을 계속합니다.
- ④ 2026년 4월 ~ 8월의 인정·지급에 대해서는, 2026년도 예산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안내대로 인정·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십시오.
- ⑤ 지진이나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분의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학교로 상담하여 주십시오.

4 참고 (지급내용 및 지급시기)

※ 2024년 9월 시점에서의 예정입니다.
인정된 경우, 지급내용 확인의 참고가 되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학 용 품 비 등			초등학교 1 학년	초등학교 2~6 학년	중학교 1 학년	중학교 2・3 학년	지급일
	1 학기분		5,670 엔	6,680 엔	10,690 엔	11,560 엔	6/1 경
	2 학기분		4,320 엔	5,040 엔	8,200 엔	9,000 엔	10/27 경
	3 학기분		3,240 엔	3,780 엔	6,150 엔	6,750 엔	1/26 경
온라인학습 통신비	전학년	1 학기분 : 6,250 엔, 2 학기분 : 5,000 엔, 3 학기분 : 3,750 엔					1 학기분:6/1 경 2 학기분: 10/27 경 3 학기분:1/26 경
입학준비금	초 6	63,000 엔					2/25 경
졸업앨범비 등	초 6 중 3	3/1 시점에 취학원조를 받고 졸업앨범비 등을 구입하는 아동 학생에게 지급				실시액	3/31 경
학교급식비	전학년	초등학교, 나루미(鳴海)중학교는 원칙상, 보호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학교장이 급식 실시기관에 지불) 중학교에서 스쿨런치를 실시하는 학교는 실제로 음식한 금액을 보호자에게 지급					【스쿨런치분】 4 월분 : 6/1 경 3 월분 : 3/31 경 그밖의 달 : 다음달 25 일경
야외활동비	초 5 중 2	실시 시점에서 취학원조를 받고, 숙박을 동반한 야외 활동에 참가한 아동 학생에게 지급					실시 후 (2~3 개월 후)
수학여행비	초 6 중 3	실시 시점에서 취학원조를 받고, 수학여행에 참가한 아동 학생에게 지급					
통학교통비	특별한 교육적 배려로 초등학교 4 km이상・중학교 6 km이상의 통학 거리가 있는 학교에 공공 교통기관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아동 학생에게 지급 (특별지원학급의 통학에 대해서는 통학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7 월 10 월 1 월
학교생활관리 지도표문서비	전학년	식품 알레르기, 심장・간장 관련의 질환에 관하여 의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관리 지도표의 문서료를 지급. 의료기관의 영수증이 필요				실비액 (한도액 3,000 엔)	4,5 월분 : 6/25 경 그 외의 달 : 다음달 25 일경
학교병 의료비	학교의 지시로 치료한 <u>학교병</u> ※의 치료비를 학교장이 의료기관에 지불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트라코마(유행성 결막염), 결막염, 중이염, 만성 부비강염, 충치, 아데노이드(편도선						

	증식비대증), 기생충병, 특정 피부병입니다.
--	--------------------------

※학용품비 등과 온라인학습 통신비는, 학기 도중에 인정된 경우 위의 금액의 일부가 지급됩니다.

※온라인학습 통신비는 자녀가 통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태블릿 단말을 활용한 가정학습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활보호수급 세대는 수학여행비와 학교병 의료비 만을 지급합니다. 그 외는 생활보호비(교육부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병 치료시에는 반드시「치료명세서」등을 사전에 학교로부터 받아, 의료기관에 가져 가십시오. 또한, 어린이 의료증, 한부모가정 의료증이 있는 경우는 그 의료증을 우선시합니다.

※보호자가 계좌이체를 신청하신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 계좌에 직접 이체됩니다.

입금명의로는 「エンジョナゴヤシ」입니다. 단, 학교징수금 중 취학원조 대상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 미납이 발생한 경우, 계좌이체 신청이 되어 있어도 학교로 지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제출서류

・취학 원조 신청서

색칠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세대상황란에는 동일세대분 전원을 기입해 주십시오.

신청서의 「동의」에 세대주가 이름을 자필로 서명하시고 동의한 경우, 증명서류는 필요없습니다.

※ 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분은, **자녀 한 명 한 명에** 대해 신청해 주십시오.

※ 나고야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증명서류 (신청서의 「동의란」에 세대주가 서명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필요)

※ 동의하지 않은 것 외에, 2025년 1월 2일 이후로 나고야시에 전입한 경우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녀와 주소가 다른 곳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는, 정보취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인정구분	증명서류 (「동의란」 에 세대주가 서명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	증명서 등 발행장소
①	불필요	
②	보호결정 통지서 (【2024 년 4 월 2 일 이후】정지・폐지)	구청 민생어린이과 지소 구민복지과 (사회복지사무소)
③	아동부양수당 증서 (수급 기간이【2024 년 11 월 이후】의 것) 복사본 ※사회복지 사무소장이 날인한 페이지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부모 중 어느 한 분이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어 아동부양수당을 수급받고 계신 경우에는, 중증장애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장애자수첩 사본 등) 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④	세대 전원분의 시민세・현민세・산림환경세 증명서 (복사본 가능) ※2025 년도 (2024 년도분 소득) 증명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상 부양받고 있는 분, 고등학생 이하인 자는 필요없습니다.	시세사무소・출장소, 구청・지소의 세무 창구

6 제출기한

(1) 2025 년 9 월부터의 인정을 희망하시는 분

2025 년 9 월 30 일 (화) 까지 학교에 제출

※ (1) 의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학교로 상담해 주십시오.

(2) 신청은 2025 년 10 월 이후도 상시 접수받고 있습니다 (3 월은 제외). 단, 취학원조비 지급은 원칙상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 신청이 접수된 달 이후 (신청한 달의 1 일 현재에 나고야시의 초・중학교에 재적이 없는 사람은 다음 달 이후)가 대상이 됩니다. (예: 2025 년 11 월에 인정 → 11 월분부터 지급 개시)

【취학원조에 관한 문의처】나고야시 교육위원회 학사과 (TEL 052-972-3217, FAX 052-972-4175) 또는

취학 원조 신청서

(인정기간 : 2026년 8월까지)

(수신) 나고야시 교육위원회		년 월 일	
나고야시립 학교장			
아래 사항에 동의한 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취학원조를 신청합니다.			
· 심사를 위해, 교육위원회가 동거자 전원의 주민기본대장 및 학령부 정보를 열람하고 필요에 따라 세대상황을 조사하는 것			
· 교육위원회가 신청 및 심사 정보를 취학원조 사무 처리에 활용하는 것			
· (2026년 9월 이후의 계속신청 절차에 대하여) 현재 이미 취학원조를 받고 있고, 취학원조 의 인정기간이 8월에 만료되는 분에 대하여 : 기간 만료 이후, 계속해서 취학원조 인정을 받지 않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기간 만료까지 그 취지를 학교에 신고할 것. 신고가 없는 경우는 취학원조 계속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취학원조 급부의 청구 및 반납에 관한 사무를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청구에 대해서는 위임한 사무를 재위임하는 것			
· 계좌이체의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취학원조비의 영수를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			
· 학교징수금이 미납인 경우, 취학원조비의 영수 및 학교징수금으로의 충당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			
※나고야시립 학교로 전학한 경우, 위의 위임행위는 전학처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합니다.			
신청자 (보호자)			
성 명 (자필 서명)			
주 소	초(町)명, 번지・번호, 아파트・맨션명, 방 호실		
	名古屋市 区		
세대 상황 거 (동 친 거 권 자 전 원) 및 별	성 명	관 계 (아동학생과의)	생 년 월 일
	후리가나	아동학생 본인	・ ・
		보호자 관계 ()	・ ・
			・ ・
			・ ・
			・ ・
			・ ・
			・ ・
			・ ・
			・ ・
신 청 항 목 ・ 이 유	(해당하는 항목의 번호를 한개만 ○ 해 주십시오.)		
	1	생활보호를 받고 있다	
	2	생활보호가 정지 혹은 폐지되었다	
	3	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었다	
	4	소득이 아래 표에 있는 기준액 이하인 분	
	그 외 (생계유지자의 상해 질병실업 (해고 도산)에 의한 수입 격감, 해외에서 전입하여 소득증명이 불가한 등) ※그 외 사유로 인한 신청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입한 후에 사전에 학교로 상담해 주십시오. ※이혼조정 중 등으로 별거하고 생계가 따로 되어 있어서 세대에 포함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동 의	취학원조 심사를 위해 교육위원회가 동거자 전원의 생활보호 정보, 아동부양수당 정보 및 소득 정보를 열람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 및 인정된 경우, 인정이 계속되는 한 교육위원회가 이러한 정보를 열람・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A・B 를 해 어 느 주 입 하 나 오 에	A 네, 동의합니다. ※아래에 세대주가 서명해 주십시오 ↓	
		※신청시에 증명서류는 불필요합니다. 단, 해당 데이터가 취득 불가한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신청항목 '4'로 신청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 현재 나고야시에 주민등록이 없으신 분의 소득정보에 대해서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서명이 없는 경우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대주 성명 (자필 서명)	
		(조부모 등 동거가족에 주민표상 세대분리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 경우, 그 세대의 세대주도 서명해 주십시오.)	
	세대주 성명 (자필 서명)		
	B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겠습니다.		
비고			
	인정자 번호		